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가단236142 판결 [지료상당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2.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용희

변 론 종 결 2023. 2. 14.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서울 마포구 E 대 8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부분 지상 전신주를 철거하고, 위 ㄴ부분을 인도하며, 39,330원 및 2022. 1. 1.부터 ㄴ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8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서울 마포구 E 대 8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부분 지상 전주를 철거하고, 위 ㄱ부분을 인도하고, 131,103원 및 2022. 1. 1.부터 ㄱ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9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료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서울 마포구 E 대 8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지상 전신주를 철거하고, 위 ㄴ 부분을 인도하고, 2018. 3. 7.부터 ㄴ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9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위 감정도 표시 ㄱ 부분 지상 전주를 철거하고, 위 ㄱ 부분을 인도하고, 2018. 3. 7.부터 ㄱ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9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5. 서울 마포구 E 대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8. 3.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실제 침범면적 0.03㎡, 결정면적 1㎡, 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에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실제 침범면적 0.1㎡, 결정면적 1㎡, 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에 전압 22.9kv, 전주번호 F의 전주(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산마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전신주를 통하여 위 ㄴ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전주를 통하여 위 ㄱ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전신주를 철거하고 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전주를 철거하고 ㄱ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전신주 및 전주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훨씬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지금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왕래하는 인도 또는 도로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및 승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전주 및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通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다2537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 7,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이 사건 전주 및 전신주를 설치할 무렵에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한 점,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는 ㄴ 부분이 서울 마포구 G 도로에 포함되는 부분인 줄 알고 이 사건 전신주를 설치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전신주 설치에 있어서 토지 일부를 제공하였다거나 설치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ㄴ 부분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전주가 원고 및 인근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이 사건 전주가 철거된 경우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바로 앞 부분에 이 사건 전주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주의 높이나 상공에 위치한 전선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주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는 점이 명백한 점, 전주의 경우 이설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전주의 이설로 인해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거나 전기공급이 중단되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한 피고 공사의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을, 피고 공사는 ㄱ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수익함으로써 해당 부분 토지의 차임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산마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ㄴ부분 중 이 사건 전신주가 차지하고 있는 실제 면적은 0.03㎡이고, ㄱ부분 중 이 사건 전주가 차지하고 있는 실제 0.1㎡임에도 위 감정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결정면적을 각 1㎡로 감정하였고, 원고는 그 결정면적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고 있다.

공간정보법 제68조에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제1항),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도록' 규정하고, 제2호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한 결정면적은, '법원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그 토지가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 미만의 단수의 표시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을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5. 12. 11.자 2015그210 결정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라 그 사용수익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게 된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정면적이 아닌 실제 점유하는 면적에 따라 부당이득금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선내 ㄱ, ㄴ 부분의 결정면적인 각 1㎡을 기준으로 한 임료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8. 3. 7.부터 2021. 12. 31.까지 합계 1,311,033원이고, 2022. 1. 1.부터는 월 32,983원이며, 그 이후의 임료도 위 금액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2018. 3. 7.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39,330원(= 1,311,033원/1㎡ × 실제 점유 면적 0.03㎡, 원 미만 버림) 및 2022. 1. 1.부터 ㄴ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89원(= 32,983원/1㎡ × 실제 점유 면적 0.03㎡,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피고 공사는, 2018. 3. 7.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131,103원(= 1,311,033원/1㎡ × 실제 점유 면적 0.1㎡, 원 미만 버림) 및 2022. 1. 1.부터 ㄱ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98원(= 32,983원/1㎡ × 실제 점유 면적 0.1㎡,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마포구 G 도로가 실제 지적측량과는 다르게 설치되어서 피고 C가 ㄴ 부분이 그 도로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전신주를 설치한 것으로, 피고 C는 선의의 점유자이고, 그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전신주가 이 사건 건물에 바로 접하고 있고, 피고 C가 이 사건 전신주를 설치하기 전에 지적공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을가 제1, 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C가 ㄴ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전신주를 철거하고 ㄴ부분을 인도하며, 39,330원 및 2022. 1. 1.부터 ㄴ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8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전주를 철거하고 ㄱ부분을 인도하며, 131,103원 및 2022. 1. 1.부터 ㄱ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9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혜원

별지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제2항에 의하면,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